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60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㈜링크솔루션

2. 조치내용

□ **(원안의결)** ㈜링크솔루션 과태료 2,520만원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

○ 회사는 2021.11.25. 47인(6개월간 누적 청약 대상자 83인*)에게 상환전환우선주 8.0억원(청약의 권유 합계액 9.0억원)을 모집하면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* 2021.6.30. 36인(1억원), 2021.11.25. 47인(8억원)으로 총 83인(전문가·연고자 제외시 66인)

나. 근거법규

□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7항, 제119조 제1항, 제130조 제1항, 제449조 제1항 제36호,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, 제120조 제1항, 제137조 제1항 제3호, 제390조 등